##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동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54

발의연월일: 2025. 4. 11.

발 의 자:고동진・김소희・박정훈

박덕흠 • 서일준 • 박준태

성일종 • 박충권 • 주호영

백종헌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가운데,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한편 현행의 특별법에서는 학생, 학부모가 '교육활동 중인 교원'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, 이를 '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'로 정하고 있지만 동 특별법상에서의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어 '형법상의 일반 벌칙'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학생,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행위를 할 경우,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가중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, 교권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는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34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특례) 제19조제1호가목 중 「형법」 제25장(상해와 폭행의 죄)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은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34조의2(교육활동 침해행위에
	대한 가중처벌 특례) 제19조제
	1호가목 중 「형법」 제25장
	(상해와 폭행의 죄)에 해당하
	는 행위를 한 학생 또는 그 보
	호자 등은 형법상 그 죄에 정
	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
	까지 가중한다.